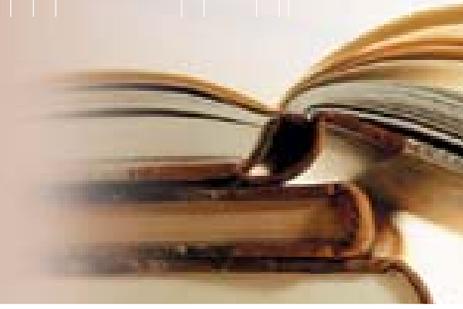


## ◎ 부도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변제 여부

Q : 저는 甲제조회사에 고용되어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3개월이 지나자 甲회사는 도산하였고, 甲회사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금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분의 임금을 위 근저당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A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담보물권 등에 우선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현행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그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회사의 도산시로부터 3월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다른 근저당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 ◎ 퇴직위로금의 법적 의무사항 여부

Q : 다니던 회사의 재무가 악화돼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구조조정이 실시될 걸로 예상되고, 저도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간 것 같은 눈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위로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퇴직위로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시 경영상해고(정리해고) 과정에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해고 회피노력 과정에서 일정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